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10. 7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97. 10. 7
- 다. 상정일자 : '97. 10. 22 (제5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자 : 내무과장 최영옥

나. 개정사유

- 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군으로의 환원하거나 새로이 읍면으로 위임하는등 군·읍면간 사무 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위임사무의 위임 및 적용근거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위임사무의 소관을 화순군조례 제1494호 ('97. 7. 18)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화순군규칙 제890호 ('97. 8. 12)로 공포된 화순군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바로잡기 위함임.

다. 주요내용

■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중

첫째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등에 따른 사무위임 소관 변경은

- 산업과 소관 "농지전용신고수리" 사무와 건설과 소관 "농어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 사무를 신설된 농업정책과 소관 읍면 위임 사무로

둘째 : 군·읍면간 사무배분의 합리적 재조정은

- 재무과 소관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사무"는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군세의 납세고지서 교부"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군유 잡종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자료조사 군유잡종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자료조사 군유잡종재산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 "군유 잡종재산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독려" "군유 은의재산 발굴" 사무 읍면 위임.

- 지적과 소관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 사무 읍면 위임
-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 읍면 위임
-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 및 변경"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도 감독" 사무 읍면 위임.

셋째 :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은

- 재무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민원봉사실 소관 위임사무로 조정
- 건설과 소관 읍면위임사무중 "2,000만원 이하 공사 시행"을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소관을 실과소 공통 위임사무로 조정하였고,

넷째 : 상위관계법령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 도시주택과 소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로 개정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길중)

-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화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화순군 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를 위한 개정 조례로서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생 략"

첨 부 :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7 - 113
------------	----------

제출년월일 : 1997. 10. 7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군 사무의 읍면 위임사무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무를 군으로의 환원하거나 새로이 읍면으로 위임하는등 군·읍면간 사무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위임사무의 위임 및 적용근거를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면서 위임사무의 소관을 화순군조례 제1494호 ('97. 7. 18)로 개정 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화순군직제규칙 제890호 ('97. 8. 12)로 공포된 화순군직제규칙의 실과소별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하고, 일부 자구를 바로잡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제2조 (위임사항)의 별표중
 -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등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 변경
 - 산업과 소관 "농지전용 신고수리"사무와 건설과 소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 사무를 신설된 농업정책과 소관 읍면 위임사무로
 - 군·읍면간 사무배분의 합리적 재조정
 - 재무과 소관
 -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읍면 위임사무에서 삭제
 - "군세에 관한 제증명 발급", "군세의 납세고지서 교부", "군세의 체납액 징수 독려", "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군유 잡종 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자료조사", "군유 잡종재산 보존관리 및 실태조사", "군유 잡종재산 임대 및 사용료 징수 독려", "군유 은익재산 발굴" 사무 읍면 위임.

- 지적과 소관 "건축물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사무 읍면 위임
-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 읍면 위임
-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 및 변경",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도 감독" 사무 읍면 위임
- 불합리한 위임사무의 소관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재무과 소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민원봉사실 소관 위임 사무로
- 건설과 소관 읍면위임사무중 "2,000만원 이하 공사 시행"을, "2,000만원 미만인 공사로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사업"으로 위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소관을 실과소 공통 위임 사무로 함.
- 상위관계법령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117조)에 따른 위임사무 신설
- 도시주택과 소관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건축법 제72 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 제3조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로 개정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위임사항) 중 "별표 권한위임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감독) 중 "전조"를 "제2조"로 하고,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를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감독) 전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p>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면장을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p>

한국 위임사 향

구한위암사행

권 한 위 임 사 항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기 관	비고
	5. 수도폐전 신청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	"	
	6. 쓰레기 봉투 판매인 지정 및 변경	○ 화순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 제11조	"	신설
	7.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도 관리	○ 화순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징수에 관한 조례 제13조	"	
	8. 개입급수전 설치허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7조	"	
	9. 급수사용료의 이의신청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	"	
	10.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	
	11. 급수신고 업무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제1항	"	
	12. 급수장치 관리의무 승계업무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2조	"	
	13. 수도사용료 감액 신청 처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	"	
	14. 급수공사의 승인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	
	15.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2	"	
	16. 급수공사의 시행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	"	
	17. 급수공사의 준공검사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2	"	
	18.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5조	"	
	19. 상수도 요금의 조정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	

권 한 위 임 사 항

실 과 소 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기 관	비 고
	20.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21. 정수 처분 22. 급수장치 철저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0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 ○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	읍면 " "	
농 업 정책과	1. 농지전용신고 수리 2.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시설물 사후관리	○ 농지법 제37조, 농지법 시행령 제40조, 농지 전용 업무처리세부규정 제38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	읍면 " "	산업과 건설과
산업과	1. 수도묘관 공동방제사업 2. 수도비배관리 및 지도 계몽 3. 농약공급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 " ○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	읍면 " "	
산림과	1. 신고에 의한(임야외) 임목 벌채 2. 가로수관리 3. 입산신고	○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 제1항 10호 ○ 산림청예규 제302호 (87. 1. 3) ○ 산림법 제98조	읍면 " "	
지 역 경제과	1.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 화순군시장운영관리 조례 제5조	읍면	
건설과	1. 도로점용허가 2.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 3.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도로법 제22조,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읍면 " "	

권 한 위 임 사 항

실 과 소 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기 관	비고
도 시	1. 토지 출입허가	○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읍면	
주택과	2. 토지형질변경 허가 (1,000m ² 이하) 및 단속 조치	○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92조 제1항	"	
	3. 무허가 ·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조치	○ 건축법 제69조 제1항	"	
	4. 연면적 85제곱미터 (건축법시행령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5.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써 5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 재축 및 대수선 다만, 동조동항동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 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6.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의 증축 · 개축 · 재축 및 대수선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7. 죽목의 식재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8.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5호 별표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병원, 슈퍼마켓, 금융업소 및 학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9.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 가설 천막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	
	10.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9조	"	
	11. 건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5조 제2항	"	

권 한 위 임 사 항

실 과 소 명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 임 기 관	비고
	12.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72조	읍면	
보건소	1. 대만 채배허가등 2.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 업무 3. 배정 범위안의 방역약품 유류 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등	○ 대마관리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4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읍면 " "	